■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　　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건물번호 [ ] 부여 [ ] 변경 [ ] 폐지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14일

신청인 (대표자)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	팩스번호
	주소		

신청내용	건물등관할구역	도로명		
	건물번호 ※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			
	부여 · 변경 · 폐지의 사유 :			
	건물등의 이름과 용도	건물번호판의 교부 여부	[ ] 교부	[ ] 미교부
		※ 도로의 유형(대로·로·길)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. ※ 미교부에 표시한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신청서 또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		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·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를 신청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신청인　　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부여·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.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나.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(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) 2.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: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	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,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, 신축 · 증축 · 멸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　　(서명 또는 인)

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.

① 문자 메시지 [ ]　② 전자우편 [ ]　③ 팩스 [ ]

신청인　　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 수	➔	기초 조사	➔	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	➔	결 재	➔	고시 및 고지	➔	건물번호판 설치
신청인		처리기관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및 시 · 군 · 구(도로명주소 담당부서)										건물 등의 소유자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(뒤쪽)

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

일련번호	건물번호	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주소	전화번호	서명
	사용중인 건물번호	변경하려는 건물번호	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